

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”
을 “훈련기간과 동일한(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훈련의
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장학생의 의무) ① (생 락)</p> <p>① 충청북도지사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부 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<u>기간의 2배에 상당한 기간동안</u> 도에 근무 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년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장학생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훈련 기간과 동일한 (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 하는) ----- -----</p>